

ACI Issue Report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둔 시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운영 경과와
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안점

February 2024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둔 시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운영 경과와

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안점

ACI Issue Report | February 2024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김유경
전무이사

T. 02-2112-0639

E. youkyoungkim@kr.kpmg.com

김규림
이사

T. 02-2112-4089

E. gyulimkim@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e@kr.kpmg.com

박수진
연구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 준수와 미준수 시 사유를 설명하는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전면 공시 의무화를 3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질적 개선을 위해 3차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도의 개념과 현재까지의 운영 경과, 지배구조보고서 상 공시되는 핵심지표 공시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또한 2024년부터 적용되는 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감사(위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Page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도입 배경 (1999년~2016년)	3
2.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도입 경과 (2017년~2023년)	5
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6
4.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둔 시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3차 개정과 향후 전망	9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도 자율공시 체계로 도입되었으나, 참여율과 공시 품질이 저조하다는 의견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도입 배경 (1999년~2016년)

민간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시장 참여자의 인식 제고에 기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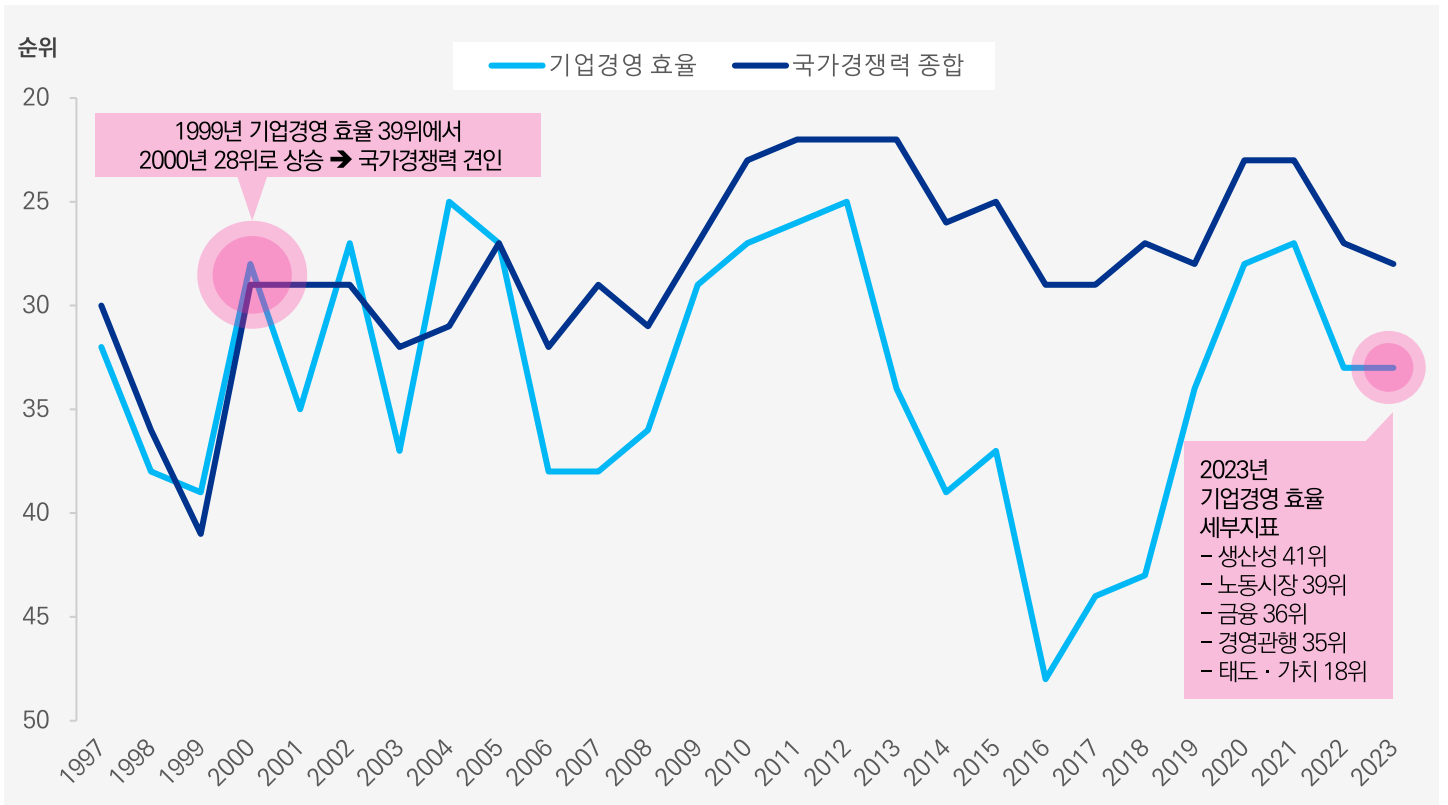
1997년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면서, 당시 정부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의무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1999년 2월 민간 주도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 기능 제고와 주주 중심 경영 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고, 이후 약 7개월간 논의 끝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과 한국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단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제정 당시 41위에 머무르던 한국의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듬해 29위까지 반등하는 등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생소했던 기업지배구조라는 개념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모범규준만으로는 도입 이후의 실제 이행 여부를 공시할 의무를 기업에 강제할 수 없고, 기업이 모범규준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 공시하거나 또는 이를 준수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 1: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영 효율 세부지표 순위 추이(1997년-2023년)]



Source: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7-2000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선제적 도입... 그러나 정보 공시는 미흡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를 표방하며,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모범규준을 도입하였으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ACGA의 2016년 기업지배구조 연례 평가에서 아시아권에서 최하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성적표(11개국 중 8위)를 받았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시기는 한국보다 늦었지만, 모범규준의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Comply or Explain(CoE,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선진 자본시장이 동 공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상이한 경영문화로 불거질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이슈에 사전대응한 것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이른 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지목한 바 있으며, 글로벌 헤지펀드는 취약하였던 한국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집중 공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에 대한 적극적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지표에 대한 기업의 준수활동을 기재하고,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자료 2: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공시체계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운영 현황]

국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명칭	규제 방식	감독기관
싱가포르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상장규정	증권거래소
영국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상장규정	금융당국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	상장규정	증권거래소
프랑스	Corporate Governance Code of Listed Corporations	법규	금융당국, 민간
호주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상장규정	금융당국
홍콩	Corporate Governance Code	상장규정	증권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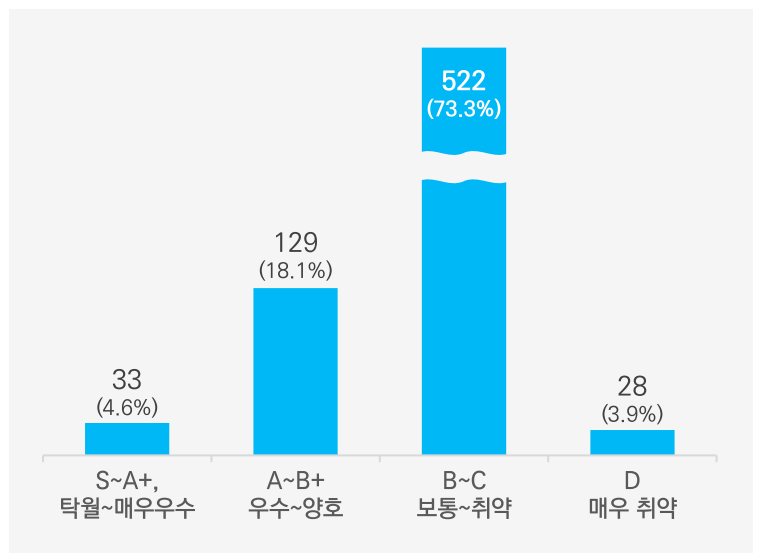
Source: ECGI, 삼정KPMG

[자료 3: ACGA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 2016년]

ACGA 순위	국가
1	싱가포르
2	홍콩
3	일본
4	대만
5	태국
6	말레이시아
7	인도
8	한국
9	중국
10	필리핀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자료 4: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등급 현황, 2016년]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2.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도입 경과 (2017년-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주요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Comply or Explain(CoE: 원칙 준수, 미준수 사유 설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거래소가 모범규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15개 핵심지표를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범규준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동 제도는 도입 초기 자율공시로 도입되었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먼저 참여율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56개사 중 70개사(9.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고서 분석 결과 핵심지표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의무화 1년차인 2019년과 5년차 2023년 사이 핵심지표 준수율을 비교 시, 15개 핵심 지표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등 일부 지표를 제외한 9개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되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국내 상장사의 외형적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일정]

적용시기	2019년	2022년	2024년	2026년
자산총액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천억원 이상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자료 6: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이후 핵심지표 준수율 변화(2019년~2023년)]

대분류	핵심지표 중분류	2019년	2023년	개선수준(%p) 2019년~2023년
		(의무화 1년차)	(의무화 5년차)	
주주 (4개)	1.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11.8%	32.7%	+20.9
	2. 전자투표 실시	24.2%	78.9%	+54.7
	3.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총 개최	47.2%	74.2%	+27.0
	4.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	25.5%	46.5%	+21.0
이사회 (6개)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65.2%	40.9%	-24.3
	6.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96.3%	78.6%	-17.7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6.1%	19.5%	-6.6
	8. 집중투표제 채택	5.6%	3.5%	-2.1
	9.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59.6%	65.4%	+5.8
	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74.5%	99.7%	+58.2
내부감사 (5개)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65.8%	92.1%	+26.3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53.4%	47.5%	-5.9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93.2%	92.5%	-0.7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감인과 회의	39.8%	64.5%	+24.7
	15.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93.8%	98.1%	+4.3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단계적 의무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영역 확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영역 확대

전 세계적으로 주주권리보호의 움직임이 큰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의무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기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나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은 저조한 이사회 참석율이나, 과도한 겸임 혹은 장기연임과 같은 정량적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 이후에는 [자료 7] 및 [자료 8]의 감시의무소홀, 배당정책 수립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항 영역의 정보가 대외 공개 되었기에, 관련 영역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대 되었다.

[자료 7: 국민연금기금의 이사 및 감사 세부 반대 사유]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장기연임(10년 이상)	33	13.5	22	12.4	10	4.0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77	31.4	45	25.3	71	28.3
이사회 참석률 저조(75% 미달)	24	9.8	15	8.4	13	5.2
과도한 겸임	43	17.6	31	17.4	33	13.1
감시의무소홀	10	4.1	19	10.7	25	10.0
기타	58	23.7	46	25.8	99	39.4
합계	245	100.0	178	100.0	251	100.0

Source: 국민연금기금, 삼정KPMG ACI

[자료 8: 국민연금기금의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과의 대화 수행 내역]

구분	주제	기업수		서한발신		비공개 면담		소개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중점관리 사안	배당정책 수립	30	38	41	47	20	25	61	72
	임원 보수한도	12	13	12	13	29	23	41	36
	법령상 위반 우려	26	17	36	15	39	25	75	40
	지속 반대 의결권	11	11	11	12	16	23	27	35
	정기 ESG 평가	1	0	1	0	5	0	6	0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26	39	31	50	7	11	38	61	
기타	52	21	45	0	20	28	65	28	
합계		158	139	177	137	136	135	313	272

Source: 국민연금기금, 삼정KPMG ACI

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3차 개정 가이드라인 이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현황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단계적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관련 핵심지표를 공시해야 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상장기업은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따라 정정공시를 이행한다. 또한 공시 불이행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벌점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CoE 방식의 공시제도 특성상 보고자인 상장사와 공시규제 담당기구인 한국거래소 간에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CoE 공시의 취지상 일정한 기준을 제공한 후 O, X 판단을 기업에 맡김에 따라 준수 여부에 대한 거래소 판단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행 기업 중 126개사(36.5%)에 정정공시 요구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서 발송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자료 9: 2020년-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행 기업 및 정정공시 요구와 준수요청서 발행 등 조치 이행 추이]

구분	조치 내역			조치 건수 합계 (조치율)
	정정공시 요구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서	유선 통보	
2020년(181개사 의무발행)	28건	143건	13건	184건(101.7%)
2021년(175개사 의무발행)	20건	101건	34건	155건(88.6%)
2022년(345개사 의무발행)	26건	100건(통합하여 공개)		126건(36.5%)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자료 10: 한국거래소의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 대상 선정 사유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구분	내용
주요 기재사항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전체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시된 표를 누락 다만,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제외(예: 불성실공시지정현황)
핵심지표 준수현황표의 준수여부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실제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준수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주요 지적사항: 내부통제, 독립적 내부감사지원조직, 중장기 배당정책 통지 등)
정정공시 등 사후관리 이후 절차	
정정공시 대상 선정 절차	<p>점검결과 중대오류발견 → 의견청취 등 소명절차 개시 → 소명완료 혹은 정정요구</p>
정정공시 불응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p>정정요구 시한까지 정정 불이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공시위원회 개최 → 불성실공시 지정</p>

Source: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외형적 핵심지표 준수율은 개선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다소 부족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충실성 제고 필요

삼정KPMG ACI가 ACI자문교수와 협업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준수율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의 신뢰도와 기재사항의 충실도가 아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1.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통지 분석

[자료 11]과 같이 조사대상 기업 327개사 중 321개사가 기업이 공시한 내역과 실증분석한 결과가 일치해 공시 신뢰도가 높았다. 또한, 유형1에 해당하는 151개사 중 128개사는 가이드라인 요구 사항 외에도 [자료 12]와 같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다. 유형2 기업 170개사 중 157개사도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자료 13]과 같이 적극 안내하며, 그 중 138개사는 문서화나 대외 공시된 배당정책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내부 배당정책의 방향성을 공시하였다.

[자료 11: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통지: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 분석 값 비교를 통한 유형 분류]

조사대상	유형 분류(대)	유형 분류(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일치, 321개사	유형1(기업 준수공시O, 실증분석 O), 151개사(46%)
		유형2(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X), 170개사(52%)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불일치, 6개사	유형3(기업 준수공시 O, 실증분석 X), 6개사(2%)
		유형4(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O),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2: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통지: 유형1 기업 중 준수 설명 외 추가 설명을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1 기업(151개사) 중 추가 설명을 기재한 128개사	배당정책의 점검 주기(경제 및 경영 현황을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갱신) 설명	9개사(7%)
	배당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안내(정기주주총회 제외)	51개사(40%)
	배당 예측을 위한 정량적 수치나 지표가 구체적으로 기재	120개사(94%)
	기타	8개사(6%)
	상기 추가 설명을 2개 이상 포함한 기업	100개사(78%)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3: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통지: 유형2 기업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2 기업(170개사)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157개사	문서화나 대외 공시된 배당정책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삼는 배당 방향성을 보고서에 설명	138개사(88%)
	배당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경영상 이유에 해당함을 보고서에 설명	43개사(27%)
	배당정책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	4개사(3%)
	배당정책 유무와 상관없이, 배당 가능한 재원이 없기에 배당실시계획을 안내하지 못하였음을 보고서에 설명	5개사(3%)
	상기 사유를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33개사(21%)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 이하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3호(2023),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업의 준수와 미준수 여부 판단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판단 근거는 본문에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유형1]은 기업이 공시한 준수 값과 실증분석 결과 값이 일치하며, 가이드라인 이상이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 경우이다. [유형2]는 기업이 공시한 미준수 값과 실증분석 결과 값이 일치하며, 미준수 사유를 공시한 경우이다.

조사2.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도 ‘배당정책’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자료 14]과 같이 조사대상 기업 327개사 중 271개사의 기업공시 내역과 실증분석 값이 일치하여 공시 내용이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유형1 77개사 중 58개사는 가이드라인의 필수 요구 사항 외에도 [자료 15]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렸으며, 유형2 기업 194개사 중 139개사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까닭을 [자료 16]과 같이 공시하였다.

[자료 1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 분석 값 비교를 통한 유형 분류]

조사대상	유형 분류(대)	유형 분류(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일치, 271개사	유형1(기업 준수공시O, 실증분석 O), 77개사(24%)
		유형2(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X), 194개사(59%)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불일치, 56개사	유형3(기업 준수공시 O, 실증분석 X), 56개사(17%)
		유형4(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O),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유형1 기업 중 준수 설명 외 추가 설명을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1 기업(77개사) 중 추가 설명을 기재한 58개사	후보 육성 목적에 따라, 후보군을 마련한 사실(단기 및 중장기 후보군, 특정 보직에 대한 후보군) 공개	55개사(92%)
	비상시 승계상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 안내(전임 최고 경영자 고문 위촉 등)	19개사(33%)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승계정책에 반영한 내역	2개사(3%)
	보유한 승계정책에 따라, 실제 최고경영자를 승계한 사실이나 혹은 예정임을 밝힌 내역	4개사(7%)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 존재 여부 내지 승계와 관련된 규정 전문을 공개한 경우	15개사(26%)
	상기 추가 기재사항을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32개사(59%)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유형2 기업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2 기업(194개사)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139개사	문서화된 승계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레소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정도의 수준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	132개사(99%)
	승계정책이 불필요함을 설명	7개사(5%)
	상기 사유를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조사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자료 17]의 결과처럼 조사대상 327개사 중 311개 기업이 준수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형1 45개 기업 중 과반 이하인 18개 기업만 [자료 18]처럼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의 추가 정보를 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유형2 266개사 중 동 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서 내에 공시한 기업은 [자료 19]와 같이 4개사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설명도 포기하는 CoE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자료 1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 분석 값 비교를 통한 유형 분류]

조사대상	유형 분류(대)	유형 분류(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일치, 311개사	유형1(기업 준수공시O, 실증분석 O), 45개사(14%)
		유형2(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X), 266개사(81%)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불일치, 16개사	유형3(기업 준수공시 O, 실증분석 X), 16개사(5%)
		유형4(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O),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8: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유형1 기업 중 준수 설명 외 추가 설명을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1 기업(45개사) 중 추가 설명을 기재한 18개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인 경우에 한정)이 분리된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 상술된 정보가 있었던 경우	14개사(78%)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인 경우에 한정)을 분리하였고, 추가적으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개사(11%)
	상기 추가 기재사항을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1개사(6%)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19: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분리: 유형2 기업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2 기업(266개사)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4개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인 경우에 한정)을 분리하지 않아도, 독립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공개한 기업	1개사(29%)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인 경우에 한정)의 분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3개사(79%)
	상기 사유를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조사4.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는 정확도가 [자료 20]과 같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1 기업 68개사 중 62개사는 [자료 21]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보조할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운영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대비 적극적으로 공시하였다. 즉,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시한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에 요구되는 내부감사기구 등 이를 위한 수단과 활동에 적극적인 것이다.

반면, [자료 22]의 결과와 같이 유형2에 해당되는 기업 중 기업 중 과반 이상은 미준수 사유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재무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속 감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자료 20: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 분석 값 비교를 통한 유형 분류]

조사대상	유형 분류(대)	유형 분류(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일치, 237개사	유형1(기업 준수공시○, 실증분석○), 68개사(21%)
		유형2(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X), 169개사(52%)
	기업 준수공시와 실증분석 불일치, 90개사	유형3(기업 준수공시○, 실증분석 X), 90개사(28%)
		유형4(기업 준수공시 X, 실증분석○), 0개사(0%)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21: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유형1 기업 중 준수 설명 외 추가 설명을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1 기업(68개사) 중 추가 설명을 기재한 62개사	내부감사부서의 인적 구성 현황이 기술	53개사(8%)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현황 내지 수행 업무를 공개	47개사(76%)
	내부감사부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내역 공개	41개사(66%)
	내부감사부서 외 별도의 지원조직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 공개	44개사(71%)
	상기 추가 기재사항을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57개사(92%)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자료 2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유형2 기업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기업의 세부 내역]

조사대상	설명 분류	결과 값(중복 가능)
유형2 기업(169개사) 중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 71개사	감사(위원회)를 전담할 내부감사부서는 없으나, 그 외의 보조조직이 존재하며, 해당 부서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기재	71개사(100%)
	감사(위원회)를 전담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안내	1개사(1%)
	상기 사유를 2개 이상 기재한 기업	1개사(1%)

Source: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김우진 · 이민형 · 김유경 공저

연구 결론

결론적으로, 배당정책이나 최고경영자 승계와 같이 기업의 지배권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 기업은 지배구조보고서 상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재 및 미준수 시 사유를 충실히 기재해 CoE 방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 설치의 경우에는 설명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미준수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CoE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경우 기업이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으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엄밀히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미준수한 경우가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공시한 단순 O, X 결과만을 보고 해당 지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핵심지표 15개에 대한 충실성 지표를 상/중/하 단계별로 개발하고, 병행/기표하는 방식을 통해 CoE 취지를 고려한 기술과 설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문 기재사항이 투자자에게 추가 정보로 활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현실을 고려해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을 사례별 개발하고, 개발된 사례를 준수표 형태로 공시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서 내용의 신뢰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CoE 원칙만으로는 개선 여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중요한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규정 중심의 rule-based 규제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기업은 준수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준수인 경우,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업의 공시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료 23: 좋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준과 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활용해야 하는 까닭]

좋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란?

“준수 혹은 미준수에 대한 설명을 원칙적으로 **충실히** 기재한 보고서”
 “우리나라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공시에 익숙하지 않기에, **지표별로 설명의 충실도 차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투자에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 포함”
 “역설적으로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낮음**을 보여주는 단서”



Source: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 ‘24년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배구조 이슈’ 대담 영상

4.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둔 시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질적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3차 개정과 향후 전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등을 통한 충실한 작성과 능동적 점검 필요

또한 공시사항 전면 DB화에 대한 준비도 요구

보고서 전면 Database 化 ESG 평가기관 으로부터의 정합성 검토 확률 상승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운영 관련 관리 · 감독 강화

관리 감독의 관점 변화

현재까지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관리감독 방향은 기업이 보고서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관리였다면, 2024년부터의 관리감독은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는 개도 위주로 변경된다.

특히, 매년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 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대상 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 점검항목’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요 오기재 사항을 파악하고, 어떤 항목이 당해 중점점검 될 것인지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관리체계 추진

변경되는 관리체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더불어, 그 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오류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핵심지표 오기재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오류가 있는 보고서에 한정하여 정정공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관리체계에 따르면, 1회차 정정공시 요청을 받은 기업의 공시담당인력은 별도의 교육을 참석해야 하고, 2회차 이상부터의 기업은 일명 Name and Shame 전략으로 기업명과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발행년도 기준 2개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2024년 발행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적용되는 보고서이다. 이에 2차 개정 가이드라인 대비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고, 변경 사항이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과거 발행한 보고서 대비 관행적으로 전년도 공시 정보를 재활용하면서 오류가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CoE 보고방식의 강화 및 Database의 구축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CoE 체계로 운영된다. 그러나 기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상 핵심지표 미준수 시 이에 대한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준수 항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게 변경된다.

현재까지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관련 정보는 별도로 이해관계자에게 Database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Database로 구축되고 추후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된 데이터가 국내외 주요 ESG평가기관으로부터 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합성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 마련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외 법제 및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

실효성과 시의성 확보 위해 2개 핵심지표 개편

국내외 법제 및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원칙과 핵심지표 개정

Point. 세부원칙과 핵심지표 개정 방향성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요구,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세부원칙 개정 사항을 요약한 [자료 24]에서의 음영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인 ① 배당, ②(전환사채 등을 포함한) 자본구조의 변경 및 분할 합병 등 ③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자료 25]는 핵심지표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으로,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지표는 2차 개정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15개 핵심지표로 구성되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준수율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준수율이 100%에 육박한 핵심지표는 삭제되었고, 글로벌 추세와 시장 관심도가 있는 핵심지표로 대체되었다.

[자료 24: 3차 개정 가이드라인 내 세부원칙 관련 변경사항]

세부원칙	주요 개정 내용
1-4: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여부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추가
1-2, 1-4, 2-1: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 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개
2-3: 메자닌 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간 이해관계를 다르게 하는 자본조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조달과정에서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
4-2: 이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 여부 및 미준수 시 사유 기술
7-1: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 책임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남용방지 정책 공시
4-4: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 1차적인 당국의 판단 (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

Source: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자료 25: 3차 개정 가이드라인 내 핵심지표 관련 변경사항]

삭제 항목	신설 항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Source: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G(기업지배구조)를 중요시하는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내용의 DB화...

발행 대상 상장사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비 및 질적 개선 고려해야...

전면 의무화 이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조망

Point1. 시장 수요에 활용도가 높아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과거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관련 정책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면,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두고 높아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정보 수요와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의 근거가 되는 ESG 평가를 고려하여 이번 3차 개정은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업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는 데이터 축적·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모인 정보를 국문과 영문 형태의 정보로 가공하여, 국내외 ESG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현재의 G(기업지배구조) 부문의 평가가 재무정보 중심의 사업보고서와 기업이 자체 발행한 IR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되기에, 비재무정보 근거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3차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데이터로 가공되고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ESG 평가기관의 G(기업지배구조) 부문의 평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를 위하여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 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평가 제고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고,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탑재하도록 하며, 금융투자업권에 주주가치를 높이는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전면 의무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중요성은 현 수준 대비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사는 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의 정비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26: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원칙과 관련된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

정책	주요 내용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책임 강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 (주총 내실화)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밸류업)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 (배당절차 개선)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 추진 • (IR강화) 상장사, 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온·오프라인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Source: 금융위원회 외

(*) 이하 정책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의 내용을 정리

향후 도입될 ESG 공시제도와 IFRS-ISSB 기준 상 환경·사회 공시에서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역할 할 것으로 전망

ESG 공시제도 로드맵 속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역할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ESG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중 기업지배구조(G)는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E)와 사회(S)는 상장사의 참여가 비교적 낮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관련 공시 표준화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현행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체계를 유지하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개최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통해, ① ESG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2023년 6월에 확정되었고, ②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③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ESG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시작 시점을 2025년에서 1년 미룬 2026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많은 상장사가 관심을 가지는 ESG공시 기준은 글로벌 적합성과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G) 공시는 그간 시장 개도를 통해 전면 의무화를 3년 앞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대응이 된다.

환경(E)와 사회(S) 공시는 IFRS-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참고한 현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2026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의무화 시작 시점을 고려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E)와 사회(S) 관련 공시에서는 위험과 그에 따른 기회 요인을 결정짓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절차와 실제 이행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미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가 주어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내 세부원칙 3-③과 4-① 그리고 7-①의 내용이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자료 27: IFRS-ISSB S1 일반 요구사항 & S2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세부원칙]

IFRS - ISSB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의 문단 1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들)(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기구 포함)에 대한 정보와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의 문단 12.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3-③ 가(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세부원칙 4-① 가(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세부원칙 7-① 나(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Source: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삼정KPMG ACI

How KPMG Can Help

기업지배구조는 주주, 경영자,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며, 낮은 회계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부정 사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계업계 최초의 전담조직으로, Global KPMG 전문가의 Insight와 삼정KPMG ACI가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행물을 통한 지식 공유와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을 모시는 세미나로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감사(위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PMG Global ACI Network 기반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교류 지원

-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 국의 네트워크와 전문가가 활동하는 KPMG ACI는 최선의 감사위원회 그리고 감사 활동을 위하여, KPMG Member Firm에 속한 전문가 Insight로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교류를 지원합니다.



주요 가이드라인 저술 경험에 기반한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저술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을 수행한 경험으로, 감사위원님과 감사님께서 활동하시는 기업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거버넌스 개선 컨설팅 One-stop Solution 제공

- ▶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연중 활동 관리, 이사회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개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자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활동 대응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 Contact

ACI Committee

한은섭

부대표, Head of Audit
T. 02-2112-0422
E. eunsuphan@kr.kpmg.com

김유경

전무, IA
T. 02-2112-0639
E. youkyoungkim@kr.kpmg.com

한정우

상무, IGH
T. 02-2112-7672
E. jungwoohan@kr.kpmg.com

신경철

부대표, BD&M, ERI
T. 02-2112-0788
E. kshin@kr.kpmg.com

지동현

전무, IM1
T. 02-2112-7662
E. dchi@kr.kpmg.com

최재혁

상무, B&F3
T. 02-2112-0147
E. jaehurkchoi@kr.kpmg.com

신장훈

부대표, CM1, IA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김성배

전무, IM4
T. 02-2112-7404
E. sungbae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CM2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오헌창

부대표, Q&RM-DPP
T. 02-2112-7478
E. heonchangoh@kr.kpmg.com

강인혜

전무, ICE1
T. 02-2112-0363
E. ikang@kr.kpmg.com

ACI

김민규

전무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